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23-14

www.mohw.go.kr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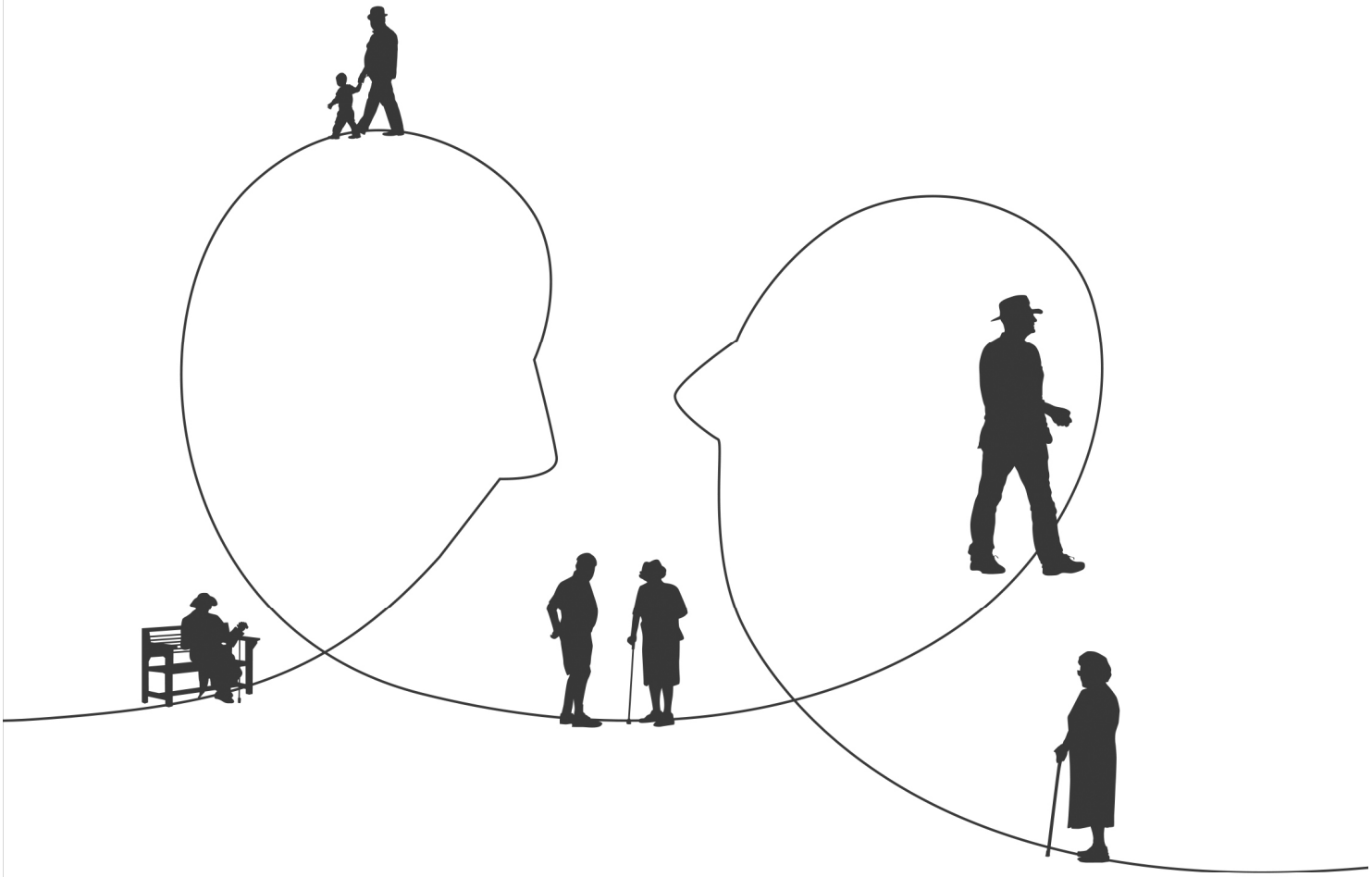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례집 활용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이하 ‘사례집’)은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양한 민원사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업무참고자료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의 목차 순서에 따라 업무유형별로 사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본 사례집에서 안내하는 사항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사례집의 사례를 모든 사례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례집은 2019년 7월 기준 법령·고시·지침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향후 법령 등의 개정 시에는 본 사례집과는 달리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의 순서로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 본 사례집은 특정 사례에 따른 해설서일 뿐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요

1–1 선정기준 ····· 3
1–2 선정기준액 ····· 3
1–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특징 ····· 5
1–4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급여액 ····· 6
1–5 지침에 대한 법적근거 ····· 7

2. 신청

2–1 복수국적자 신청 자격 ····· 11
2–2 재외국민 신청 자격 ····· 12
2–3 외국인 신청 자격 ····· 13
2–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자격 ····· 14
2–5 외국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14
2–6 거주불명등록자 신청 자격 ····· 15
2–7 거주불명등록자 신청 방법 ····· 16
2–8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17
2–9 대리 신청 자격 ····· 18
2–10 연령도래한 배우자의 변동신고 ····· 19
2–11 주민등록번호 정정된 경우 ····· 20
2–1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20
2–13 거주관련 서류징구가 어려운 경우 ····· 22
2–14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여건 확인 ····· 22
2–15 거주불명등록된 배우자의 서류 제출 ····· 23
2–16 부재 배우자의 서류 제출 ····· 23
2–17 자필 한글정자 서명 이유 ····· 24
2–18 만료된 '임대차계약서' 인정 여부 ····· 25
2–19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의 관계 ····· 26

2-20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28
2-21 무료임차소득의 산정 ····· 29
2-22 차량가액 문의하는 경우 ····· 30
2-23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 30
2-24 계좌변경 대리 신청 ····· 32
2-25 등본상 동일 주소지인 사실이혼 ····· 33
2-26 수급 탈락 후 재신청 ····· 33
2-27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 34
2-28 신청 장소가 다를 경우 ····· 35

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3-1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 39
3-2 특례 수급대상자 요건 ····· 40
3-3 유족일시금 수령자 ····· 41
3-4 직역연금 특례 수급자 사례 ····· 42
3-5 특례 수급자의 선정기준액 초과 ····· 44
3-6 지자체 간 보장결정 ····· 44
3-7 주민등록 정보 열람에 대한 법적근거 ····· 45
3-8 국민연금공단에 사실(이)혼 추가 확인 요청 ····· 46
3-9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사실이혼 인정 여부 ····· 48
3-10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48
3-11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자인 경우 ····· 49
3-12 일용근로소득 미반영 사유 ····· 50
3-13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51
3-14 공공일자리소득 미산정 ····· 52
3-15 3개월마다 갱신하는 일용근로자 소득 ····· 53
3-16 세금 공제 전 소득 반영 ····· 53
3-17 퇴사 시 근로소득 반영방법 ····· 54

3-18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 55
3-19 주상복합건물 9억 초과 산정 기준 ····· 56
3-20 비과세 토지 재산산정 방법 ····· 58
3-21 건물의 담보대출이자가 임대소득보다 높은 경우 ····· 58
3-22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지분 반영 방법 ····· 59
3-23 국가유공자 보상금 ····· 59
3-24 종교인 사적연금 소득 산정 여부 ····· 60
3-25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 62
3-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 산정 ····· 62
3-27 해지된 계좌의 이자소득 ····· 64
3-28 이자소득 반영기간 ····· 64
3-29 장기저축 이자소득 ····· 65
3-30 법원공탁금의 이자소득 ····· 65
3-31 통장·이장 직책수당 ····· 66
3-32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 ····· 67
3-33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 68
3-34 기본재산액 적용 기준 ····· 69
3-35 말소등기 이행 판결 받은 토지 ····· 69
3-3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 70
3-3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 70
3-38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 71
3-39 미등기 재산산정 ····· 72
3-40 본인명의의 공동재산 ····· 72
3-41 재산세 납부자와 등기상 소유자 상이 ····· 73
3-42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재산산정 가능 여부 ····· 74
3-43 가등기권자가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 ····· 74
3-44 종중재산 산정 제외 방법 ····· 75
3-45 공동재산 소명 시 정관 인정여부 ····· 76
3-46 종중재산의 공동 명의인 ····· 77

3-47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의미 ····· 78
3-48 채권 액면가액과 상이한 실제 금융재산 ····· 80
3-49 비상장주식 소명 서류 ····· 80
3-50 보험증권 명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82
3-51 계좌에 일시 입금된 자녀 금융재산 ····· 83
3-52 등록장애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 84
3-53 리스·렌탈 자동차 ····· 85
3-54 구매가격과 차량가액 차이 ····· 85
3-55 생업용 차량 인정 여부 ····· 86
3-56 자동차 산정 범위 ····· 86
3-57 증여재산 산정기간 ····· 88
3-58 실제 매각대금이 시가표준액 상회하는 경우 ····· 88
3-59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범위 ····· 89
3-60 임대보증금 부채 산정 ····· 89
3-61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보증금 ····· 90
3-62 세입자가 자녀인 경우 ····· 91
3-63 자녀 부채를 본인 부채로 인정 여부 ····· 92
3-64 법인채무를 개인재산으로 상환한 경우 ····· 93
3-65 처분한 재산의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여부 ····· 94
3-66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 ····· 96
3-67 마이너스 대출 ····· 97
3-68 신청자가 채무이행 의무자인 경우 ····· 97
3-69 가족 간의 사채 ····· 97
3-70 이자 상환액 부채 ····· 98
3-71 미납세액 부채 ····· 98
3-72 주택연금 수령액과 해당주택의 재산산정 ····· 100
3-73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 산정 가액 ····· 101

4. 기초연금액 결정

4-1 국민연금 A급여와 연계하는 이유 ····· 105
4-2 국민연금 급여와 기초연금액 산정 ····· 106
4-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 106
4-4 국민연금 A급여액 및 A값 ····· 107
4-5 행복e음에서 A급여액 등 확인 ····· 108
4-6 국민연금공단 신청안내문 발송 ····· 110
4-7 개인별 A급여액이 같은 이유 ····· 111
4-8 A급여액 계산 시 연령별 감액률 미적용 ····· 113
4-9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자 ····· 113
4-10 기초연금 인상폭(금액) ····· 114
4-11 A급여액 예상금액 문의 ····· 114
4-12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발생 ····· 115
4-13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 115
4-14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 116
4-15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예상액 ····· 116
4-16 기초연금액 산정 시 2/3 값 의미 ····· 117
4-17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 117
4-18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 요구 민원 응대 ····· 118
4-1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감액 연계 ····· 118
4-20 국민연금 수급자의 1월 기초연금 감액 사유 ····· 120
4-21 실제 국민연금 수급을 지연한 경우 ····· 121
4-22 국민연금관련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 122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5-1 수급권 포기 ····· 127
5-2 수급권 포기 대리 ····· 128

5–3 처리기한 기산 기준 ····· 128
5–4 미신청월의 기초연금 ····· 130
5–5 사망 시 급여지급 여부 ····· 131
5–6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기간의 경우 ····· 132
5–7 제3자 금융재산정보 ····· 132
5–8 거주불명등록자 지급기준 ····· 134
5–9 정지사유 해소 ····· 134
5–10 거주불명등록 이후 급여 지급 ····· 135
5–11 공무원의 행정착오 ····· 135
5–12 지급정지 기간의 급여 ····· 136
5–13 지급일 변경 계획 ····· 137
5–14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자격 ····· 138
5–15 전출입 시 기초연금 지급 기관 ····· 139
5–16 시설에서 입금 통장 관리 가능 여부 ····· 140
5–17 계좌 압류 시 수령 방법 ····· 140
5–18 행복지킴이 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 ····· 141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6–1 이의신청위원회 특례 적용 ····· 145
6–2 이의신청 기한 ····· 146
6–3 이의신청 절차 ····· 147
6–4 이의신청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149

7. 수급자 관리

7–1 이혼 시 단독가구 적용시점 ····· 153
7–2 사실이혼 현장 확인 조사 ····· 153
7–3 사실이혼 주관적·객관적 요건 ····· 154

7-4 주소지가 동일한 자의 사실이혼 ····· 155
7-5 해외체류 중지자의 급여 재개 ····· 156
7-6 해외체류기간 60일 산정 ····· 157
7-7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 시점 ····· 158
7-8 금고이상의 형 확정 시 지급정지 시점 ····· 159
7-9 금고이상의 형 선고기준 시점 ····· 160
7-10 형 선고일과 수감일이 다른 경우 ····· 160
7-11 벌금형 선고자의 기초연금 정지 여부 ····· 160
7-12 지급의 정지 사유 ····· 161
7-13 수급권 상실처리 업무 절차 ····· 162
7-14 타인계좌 명의의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 162
7-15 급여환수 및 소급지급 여부 ····· 163
7-16 부재 배우자 확인조사 ····· 163
7-17 가구구성사유 변경처리 ····· 164
7-18 대리수령사유 변경처리 ····· 164
7-19 환수대상자 사망 시 ····· 165
7-20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환수 ····· 166
7-21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환수 여부 ····· 167
7-22 집행유예 기간 환수 여부 ····· 168
7-23 원천징수 영수증 근거로 환수 가능 여부 ····· 168
7-24 환수금 분할 납부 ····· 170
7-25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171
7-26 법정상속인이 다수일 때 ····· 172
7-27 법정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 받은 경우 ····· 173
7-28 전출로 인한 상계처리 ····· 174
7-29 부당이득 환수 결정 지자체 ····· 174
7-30 환수금 이자 가산 대상자 ····· 175
7-31 환수금 이자 가산 방식 ····· 175
7-32 소멸시효 기산일 산정 ····· 177

7–33 부정수급 신고 ····· 178
7–34 수급자 확인서 대리 발급 ····· 179

8. 국가부담금의 관리

8–1 국가부담금 지원 기준 ····· 183

9. 서식

9–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186
9–2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196
9–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98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9–4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200
9–5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202
9–6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204
9–7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206
9–8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208
9–9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210
9–10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212
9–1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214
9–12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216
9–13 사용대차 확인서 ····· 218
9–14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 220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1 개 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요건(소득·재산 기준), 직역연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역연금 요건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활용되는 소득 및 재산 파악 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에만 수정결과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과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에서도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여 소득을 반영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 연 4%*의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에서는 공제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시근로소득 금액에서 94만원('19년 기준)을 공제하고 이렇게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더 공제합니다.

- 재산의 경우 기초연금에서는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

- 기초연금은 수급권자를 판별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담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조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비해 어르신께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산정하고 있으며 공제액도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4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은 동일한 의미인가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소득재분배 급여액(국민연금 A급여액)에 의해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월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은 같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관련 용어정리

⊕ 기초연금액 관련 용어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으로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반영(차감)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A급여액, 부가연금액에 의하여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보다 크거나 같고 기준연금액보다 작거나 같다)
- 기초연금 실 지급액 : 기초연금 급여액에 전월 소급지급분 가산, 환수금액 감액 등을 적용하여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

⊕ 소득재분배급여액(국민연금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에 비례하여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산정되는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1-5 연도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이 행정내규에 불과하므로 원고 및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침을 원고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침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길잡이 역할을 하는 준칙으로 모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단순히 행정규칙 중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8128 판결)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2 신 청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1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수급) 가능한 자

⊕ 국적요건의 적용
  ① 복수국적자
  ②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

⊕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
  ②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자
  ③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복수국적자 신청자격 부여 취지

⊕ 2011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현행 규정을 국제교류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 「국적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

⊕ 복수 국적자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납세 및 병역의무를 짐(「국적법」 제10조 및 제11조의2)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2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만 65세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이 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국내 계속 거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취지

- 2015년 1월 22일부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등 국내 자산 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 불편 해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국내거소 신고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와의 행정적 동일 처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허용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견본

- 디자인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현 주민등록증과 동일
- 수록항목은 현 주민등록증 수록항목 외에 '재외국민' 항목 추가
- 표시위치는 '주민등록증' 명칭 아래에 '(재외국민)' 기재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제도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권 부여를 위한 취지와 목적의 법 개정사항은 아님

2-3 외국인 및 외국국적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되며, 외국국적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인 배우자

⊕ 요건 : ①~④ 모두 충족한 자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③ 만 65세 이상
④ 선정기준액 이하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인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 처리 (단, '귀화허가접수증'을 제출하여 기초연금 재신청 시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부여 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신청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은 별도 없음

*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상실함

2-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2-5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조사

-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 고유식별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

- ⊕ 접수된 신청에 대해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외국인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배우자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부부가구로 조사가구 유형 확정

2-6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 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 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거주불명등록제도는 기본권 보장 이외에는 기존 주민등록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7 거주불명등록자인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 신청하며(대리 신청 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 담당자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와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확인하며, 친·인척 등 지인과의 통화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 현장 방문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의뢰하여 소재가 확인된 후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해당 읍·면·동의 거주사실 확인과 실제 거주지 읍·면·동(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통보 내용에 의해서도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신청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 자격 여부 확인

신청자의 특성		신청자격 (○,×)	신청자격 충족요건
복수국적자(주민등록이 있는 자)		○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외국 영주권 포기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음	×	대한민국 귀화
	혼인 신고 후 2년 경과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 신고 후 2년 미경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거주불명등록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출소 및 가석방
행방불명 및 실종선고자		×	행방불명신고 해제 또는 실종선고 취소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내 입국

2-8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2-9 기초연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친 족 (「민법」 767조)
  - 배우자
  - 혈 족 (「민법」 768조)
    - 직계혈족(1촌)
      -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방계혈족
      - 형제자매(2촌) - 형, 누나, 오빠, 동생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형·누나·오빠·동생의 아들·딸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삼촌·고모·외삼촌·이모 등
      -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등
  - 인 척 (「민법」 769조)
    - 혈족의 배우자 - 숙모, 백모, 형수, 매형, 매제, 며느리, 사위, 제수 등
    - 배우자의 혈족 -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처제, 시숙, 시누이, 시숙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동서, 처남댁 등

대리 신청 시 확인사항

⊕ 대리인 신분확인
-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확인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위임여부, 국외체류여부 등 유선 확인
- 필요시 출입국자료 확인
-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필수

⊕ 행복e음의 '위임장 정보등록'란에 인적사항 등록

⊕ 대리인 신청 시에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필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원칙으로 함

2-10 기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변동신고 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에 도달한 배우자의 변동신고 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령 도래에 따른 변경신청인 경우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및 관련서류 등을 모두 제출 받아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2-11 행정관청의 실수로 1955년생으로 되어 있던 출생연도가 행정관청의 직권 조정에 의해 원래 출생연도인 1945년생으로 호적이 정정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0조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동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사실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1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 내역의 정확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므로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될 경우 구비서류 보완 시까지 신청 조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확인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 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받은 전월세 임대계약사실확인원
- 이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 등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이하 "주민센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다.

2-13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관련 확인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대차확인서' 징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사실조사복명서'로 대신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주불명등록자라 할 지라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됩니다.

2-14 신용불량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거주여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거주여건 확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고시원, 쪽방촌 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사실조사복명서'도 가능합니다.

2-15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거주불명등록은 주소지에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것일 뿐 부재 배우자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6 배우자 가출로 오래전 관할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도 거주지나 연락처를 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그 외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2-17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상 서명 시 반드시 자필 한글정자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정보 등은 본인(수급희망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의가 명확한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제공 가능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정의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필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 한글정자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감 또는 무인(지장) 날인으로 대체 가능하나, 막도장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생 략)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7. (생 략)

③ (생 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 략)

2-18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지난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나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소유권의 변동이 없고,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로서 임대인에게 유선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2-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보장중지가 우려되어 기초연금을 신청을 포기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이나 보장중지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각 제도별 혜택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안내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각종 공적지원을 더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그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상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보장결정이 되어 동시 수급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이유는 전월에 수급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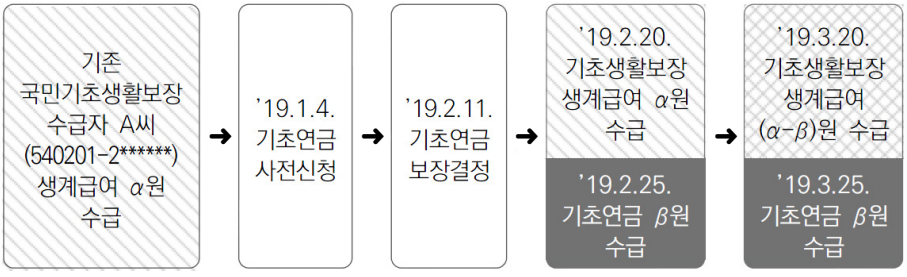

⊕ 기초연금은 어르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취지로 영국, 일본,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20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사용대차확인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주거여건 확인은 필수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로 확인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 시가표준액으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자녀에게 증여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무료임차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2011년 6월 30일 이전 자녀에게 증여하여 3년 경과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되, 무료임차소득은 미산정
  - 다만,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소비금액 등을 차감해 소진된 경우 무료임차소득 산정

무료임차소득 반영 기준 및 징구 서류

- 무료임대로 거주 중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징구하고, 무료임차소득 반영 여부 확인을 위해 자녀소유 여부 및 시가표준액 등에 대한 확인 필요

구 분		자녀 소유 주택		자녀가 임차한 주택	제3자 소유한 주택
		6억이상	6억미만		
반영여부	무료임차소득	O	X	X	X
징구서류	사용대차확인서	O	O	O	O
	임대차계약서(사본)	-	-	O	O
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O	O	O	O

2-21 만 65세 미만 배우자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하나요?

신청자(수급자)의 만 65세 미만 배우자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무료임차소득 산정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산정여부

구 분	무료임차소득 산정
'婦'는 딸 명의(시가표준액 6억) 거주, '夫'는 아들 명의(시가표준액 6억) 거주	각각 월 39만원 산정 (총 78만원 산정)
'婦'는 딸 명의(시가표준액 5억) 거주, '夫'는 아들 명의(시가표준액 6억) 거주	'夫'에 대해서만 39만원 산정
'婦'는 딸 명의(시가표준액 4억) 거주, '夫'는 아들 명의(시가표준액 4억) 거주	각각 시가표준액 6억원 미만으로 무료임차소득 미산정

⊕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대차확인서'는 부부 각자 제출

2-22 민원인이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차량가액을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공적자료가 입수된 후에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모델별 차량기준가액 정보는 보험개발원의 사이트 (www.kidi.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나, 민원인 명의의 차량 특성 등을 반영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23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대리수령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또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타방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 본인계좌 통장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⑥ (생 략)

2-24 거동이 불편하여 통장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 때, 계좌 변경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변경 대리 신청 및 대리수령 신청은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2호)', 수급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입증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확인방법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2-25 배우자와 사실상 7년째 별거 중에 있으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날인한 '사실이혼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등본 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사실이혼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거나,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정 등으로 이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혼 상태인 자가 '사실(이)혼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법률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노인 단독가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 정보 부재 등으로 '사실(이)혼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은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26 전년도에 근로소득 발생으로 탈락하였으나 최근 퇴사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2-27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6년 1월 1일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으로 예측되는 경우,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증여재산 등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소득·재산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확인해 추가등록 합니다.
- 재신청 안내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으로 판단되는 분들이니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담·안내가 필요합니다.
- 이력관리 신청자 상담 시 유의할 사항은 책정 제외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아닌 최근 조사*된 소득으로 확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 최근 조사된 소득 확인 경로: 행복e음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수급희망관리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 조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방법과 절차

⊕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자에게 신청을 안내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최초 신청 시) → 수급자격 탈락 시 매년 이력조사 실시 및 관련 공적자료 조사(시·군·구, 전년도 10~12월) → 신청 안내 대상자 확정(시·군·구, 1월 중순) → 신청 일괄 안내(국민연금공단, 1월 중순 이후)

구 분	내 용	담 당
신 청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 (신청서 제출)	신청자 → 시·군·구
이력 조사 및 수급가능성 예측	매년 말 이력조사 실시 및 안내 대상자 확정	시·군·구
신청 안내	조사 결과 안내 * 수급가능자만 안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대상자
재신청 및 자격 책정	기초연금 재신청, 신청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책정	신청자, 시·군·구

2-28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시이나 실제 본인은 B시, 배우자는 C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급희망자 본인은 국민연금공단 C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고, 그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 D지사를 방문하여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C지사 담당자분은 C지사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 신고서를 받은 후 반려하지 않아야 됨을 전달하고 국민연금 D지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받은 즉시 C지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등기 송달 후 유선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1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연금은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보장, 미래세대 부담,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공적연금 혜택을 무연금자 저연금자에게도 고르게 나누자는 기초연금의 제도 취지와 이미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는 일반수급자입니다.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특례규정을 두어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일시금자 포함)가 본인의 사정으로 파면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라 지급될 급여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면 등에 의해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에 해당되므로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직역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국방부군인연금 콜센터 (☎1577-909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110)로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3-2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또한,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65세 도래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 대상 요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65세 도래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특례적용 대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보호대상(수급자)으로 한정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특례적용 대상이었으나, 「기초연금법」 시행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상실한 경우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

3-3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연금 대신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4년이 경과되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연령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 제3항 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4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급여종류별 기초연금 특례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 적용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특례 수급자 사례별 수급자격 변동 현황

구 분		시행이전 ('14.7.1.이전)	시행시점 ('14.7.1.) 기초연금	시행이후('14.7.1.이후)		
				직역연금발생		본인 사망
				본인	배우자	
사례 1	본인(65세이상)+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특)	수급(특)	수급(특)	상실
	배우자(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특)	수급(특)	수급(특)	수급(특)또는 수급*
사례 2	본인(65세이상)+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특)	수급(특)	수급(특)	상실
	배우자(64세이하)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또는 수급*)
사례 3	본인(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	수급(특)	수급(특)	상실
	배우자(64세이하)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또는 수급*)
사례 4	본인(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특)	수급(특)	수급(특)	상실
	배우자(64세이하)+직역연금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사례 5	본인(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	수급(특)	수급(특)	상실
	배우자(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	수급(특)	수급(특)	수급(특)또는 수급*
사례 6	본인(65세이상)+직역연금	미수급	제외	제외	제외	-
	배우자(65세이상)	미수급	제외	제외	제외	제외 또는 수급*
사례 7	본인(65세이상)	미수급	수급	제외	제외	-
	배우자(65세이상)	미수급	수급	제외	제외	제외 또는 수급*
사례 8	본인(65세이상)	미수급	수급	제외	제외	-
	배우자(64세이하)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제외 또는 수급*
사례 9	본인(64세이하)+직역연금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
	배우자(65세이상)	미수급	수급	제외	제외	제외 또는 수급*
사례 10	본인(18세이하)+직역연금	장애인연금	미대상	연령도래-수급(특)	연령도래-수급(특)	상실
	배우자	미대상	미대상	연령도래-제외	연령도래-제외	연령도래-제외 또는 수급*

- 상실: 기존의 기초연금수급권이 박탈된 경우(중지)
- 제외: 신규 신청자가 기초연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미대상: 연령 미도래자 · 수급: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 수급(특): 기초연금 특례수급자

*** 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직역연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일반수급자임.**

▣ 특례적용기준 :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직역연금 제외에 해당되는 사람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ⅰ)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ⅱ)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ⅲ)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단, 기초연금 지급 개시후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특례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3-5 특례 수급자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최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경우 다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전법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되며,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즉, 특례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요건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상실 이후 다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더라도 특례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6 A시에 주소를 둔 김○○는 기존 수급자입니다. B시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 박△이 연령이 도래하여 A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A시에서 박△에 대한 보장결정을 할 수 있나요?

A시에서 B시로 신청서를 이송하여 B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결정을 합니다. 이 때, B시에서 A시로 변동알림으로 통보합니다.

3-7 기초연금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정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⑥ (생 략)

3-8 지자체에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자로부터 사실 이혼 의사를 확인 후 확인서 상의 확인자로부터 유선 확인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지침에는 최초 신청 시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확인과 확인자의 확인만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합니다. 반면, 신청자가 사실상의 이혼임을 주장하나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의 사실상 이혼상태 동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수시 확인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의뢰 전에 수급(권)자 상담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확인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확인요청 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여부 및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28조제2항에서 기초연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호에 따른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위탁업무 범위) ①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신청 등의 접수
   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다.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라.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안내 및 기초연금 제도 홍보
   나.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다.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3. 법 제11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사
   가.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이혼관계 여부
   나. 사망의심자의 사망 여부
   다. 거주불명등록자 확인조사
   라. 타인계좌입금수급자 등의 대리수령 필요성 및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마. 배우자의 부재(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 여부
   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허가 신청 여부
   사.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에 대한 휴 폐업 법인의 사업재개 여부
   아. 그 밖에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4.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사업
   나.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등 정책 지원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1항의 위탁업무 범위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9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 합의 후 별거 중이라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사실(이)혼 관계 확인은 수급(권)자의 사실관계 주장에 기초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인 주관적 요건과 부부생활의 실체인 객관적 요건을 우선 판단합니다.
- 또한, 확인자는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2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자 1인도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자녀) 정보 부재로 확인이 어렵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통·반장)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인지 부족 등

3-10 최근 외국인 여성과 국외에서 결혼한 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는 국외에 두고 혼자 입국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구로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배우자는 국내 입국이력이 없어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희망)자의 배우자의 고유식별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적용하므로 소득·재산조사 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하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3-11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자인 경우 부재배우자로 인정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교도소 수감자는 부재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침 변경 전(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재배우자로 인정된 교도소 수감자에 한해 출소일까지만 기존 지침대로 부재배우자로 인정합니다.

-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는 부재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부가구로 적용하되 부재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에서 제외합니다.
- 배우자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이 있으며, 연 1회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부재사유 지속여부 등을 관리합니다.

3-12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일용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짧은 근무와 고용의 비연속성, 소득의 불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신고된 소득으로부터 정확성을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 더욱이 「기초연금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규정하고, 임시·일용근로소득을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 감소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상시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정액('19년 기준 94만원) 공제 후 추가로 정률(30%)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소득 반영 여부

근로 형태		근로소득 반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O
	3개월 미만 고용	X
건설공사 종사자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	O
	1년 미만 고용	X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로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음	O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음	X

3-13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6개월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국외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에서 확인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다만, 상시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행복e음으로 조회되며, 동일사업장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14 공공일자리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일자리 소득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해당되며, 이는 임시적·일용적 성격이 강한 소득으로 어르신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이 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통보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외되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직장가입자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를 확인(해당 사업부서 협조요청 등)하여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3-15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고용주로 추정되며 근로계약서만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의 소득을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퇴직급여 기간 산정과 복지급여 소득산정 시의 계속 근로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3-16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 경우 소득액을 세금공제 후 실 수령액으로 반영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3-17 상시근로자가 2018년 12월 퇴사하고 2019년 1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하면 됩니다.

2019년 1월 신청할 당시 퇴직으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상태를 반영한 급여 0원을 산정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 자격결정 전 퇴직 시 처리방법

⊕ 기초연금을 '19년 1월 신청,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년 1월 15일 퇴사
기초연금 자격결정일 '19년 3월 10일

- '19년 1월 퇴사로 인하여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월소득을 확인하여 산정, 부적합시 제외 결정 후 재신청 접수하여 처리

⊕ 기초연금을 '19년 1월 신청,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년 2월 10일 퇴사
기초연금 자격결정일 '19년 3월 10일

- '19년 1월 근로소득으로 인한 부적합시 제외 결정, 재신청 안내 접수하여 처리

⊕ 기초연금을 '19년 1월 신청,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년 3월 10일 퇴사
기초연금 자격결정일 '19년 3월 10일

- '19년 1월 근로소득으로 인해 부적합시 제외 결정 재신청 안내 접수하여 3월 퇴직으로 변경된 근로소득 확인 산정, 부적합시 제외 결정

3-18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를 직권으로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국세청에서 회신이 오는 임대소득의 경우는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제외되어 있는 반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증빙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임대 수입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국세청 신고 임대소득 보유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임대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로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소득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조사방법

기준	1주택 소유	1주택 초과 소유
기준시가 9억 이하	(가)	(나)
기준시가 9억 초과	(다)	(라)

(가):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한 경우는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비과세소득으로 임대소득 경비율 직권 적용

(나)~(다):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으로 과세되는 사업소득이며, 임대소득 경비율 직권 적용이 제한됨.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로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소득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산정 가능

※ 국세청 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
: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단순경비율 60.2%

3-19 주상복합건물(겸용주택) 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주상복합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주상복합건물이 지하1층, 지상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8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며, 주택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을 경우라면

- 주택 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 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 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⑦ (생 략)

3-20 수급자 명의의 토지가 비과세인 경우로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는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으로 조회되면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산정은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출을 요청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 과세여부, 압류여부, 명의신탁여부, 신탁등기여부, 대위상속여부, 근저당 설정여부, 경매진행절차여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처분이 어려운 경우 등 그 재산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재산의 소유권여부로 재산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21 건물주에게 매월 50만원의 임대소득과 해당 건물의 담보대출이자가 매월 60만원씩 발생하는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소득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받아 소득을 파악하고, 매월 지급받는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 외 주택을 임대한 경우로 해당 주택의 임대현황을 파악하여 임대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부채로 산정하지만,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은 부채로 보지 않기에 별도로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22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로 확인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된 사업소득에서 1/2만 반영하나요?

공동명의 사업자의 소득세는 개별과세가 원칙입니다. 각각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적조회된 금액을 1/2만큼만 반영할 필요없이 조회된 금액대로 사업소득을 반영합니다.

3-23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명예수당은 보다 더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적 성격이 강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보훈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바191)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은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고, 주거용 주택, 자가용 자동차, 자경용 농지 등도 비록 그 자체로 현금 소득을 창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산의 사용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득 및 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유공자나 위와 같은 이른바 무수익재산 보유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24 은퇴한 목사님의 사적연금을 교단에서 지원 시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 교단에서는 '은급제도'로 불리는 은퇴한 목회자를 위한 노후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연금은 보상차원의 실비 성격으로서 연금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 범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3-25 일용직 근무 중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나,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의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즉, 산재 발생시점과 급여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26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에 따른 월보수액이 산정되는 보험설계사와 같이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대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함) 등은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조회 건강보험 보수월액 또는 산재보험 산정 시 보수월액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소득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법인이 아닌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는 시설을 설립하고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자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이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뿐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의사결정권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등이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사업장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사용자(대표자)의 소득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근로자보다 적은 경우에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임(서울행정법원 2003.11.1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

- 다만,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서 대표자의 경우 비상근으로 무보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3제2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1호)」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자료외 본인의 소명절차를 통해 산정제외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의 사업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의 경우 본사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 받아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을 반영합니다.

소명방법 및 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
- 제출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3-27 계좌가 해지되었는데 이자소득을 반영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의 이자는 계좌가 해지(해약)되면서 발생하게 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e음에 이자소득이 반영된 경우에는 현재 그 계좌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조회가 안 된다고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28 금융기관 자료에서 통보된 2017년 이자소득이 2019년 4월 현재의 이자소득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 자료에서 통보된 2017년 이자소득이 2019년 4월 현재의 이자소득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자소득은 반영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이자소득 반영기간

'17년 이자소득	'18년 이자소득	'19년 이자소득	'20년 이자소득
'18년 4월~ '19년 3월 적용	→ '19년 4월~ '20년 3월 적용	→ '20년 4월~ '21년 3월 적용 (예정)	→ '21년 4월~ '22년 3월 적용 (예정)

3-29 장기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을 반영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모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융기관의 이자는 해지 또는 갱신하는 시점에서 계산되어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원칙은 장기저축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저축예금(적금)의 경우, 만기(또는 해지) 전까지 해당 예금(적금)의 이자는 계산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만기(또는 해지)일에 계좌해지 신청 시 금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거치된 예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만기 또는 해지 시 발생한 이자소득을 귀속년도 이자로 신고 관리되어 지급된 이자 총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기본공제 월4만원 차감)을 당해연도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3-30 법원공탁금의 이자소득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공탁금 역시 일반 이자소득 반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공탁금이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 제3자인 법원에서 공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소정의 금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탁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 공탁금에 관한 이자는 공탁금(원금) 출금 시 소득으로 결정되므로(타 이자소득과 계산 방식이 동일하므로), 법원공탁금 역시 일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3-31 통장·이장 직책수당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나요?

통장·이장 직책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 통장·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반영 및 공제 현황 비교

분류	소분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반영	공제	반영	공제
생활조정 수당	독립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
	보훈대상자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	×
	간호수당	×	-	○	×
	무공영예수당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근거 복지대상자 지원	×	-	×	×
실업급여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3-32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는데, 소득인정액에는 언제 반영하나요?

변동된 공시가격은 그 해 11월에 행복e음을 통해 자료가 입수되어 다음해 상반기 확인조사(4~6월) 시 (기존) 수급자의 일반재산에 반영하며, 신규 신청자인 경우 그 해 11월 이후부터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합니다.

「기초연금법」상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정보 정리가 완료되는 10~11월 경 행복e음에 연동됩니다.

2019년 공시가격 반영 흐름도

국토부/지자체	지자체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시가격 조정	재산세 부과·납부	재산세 납부정보 정리	선정기준액 상향	수급자 재산에 반영
'19.1~5월 단독주택: '19.11.25 → 공동주택: '19.4월말 표준토지: '19.2.13 → 개별토지: '19.5월말	→ '19.7~9월 주택: '19.7, 9월 토지: '19.9월	→ '19.10월	→ '20.1월	→ (기존수급자) '20.4월 (신규신청자) '19.11월

* 취득세는 다음 달부터 납부정보 조회

3-33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 주택은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 (토지·주택) 씨:리얼(SEE:REAL) 부동산 정보 포털(http://www.seereal.lh.or.kr)
- 좌측 메뉴 '부동산종합정보' 클릭
- (개별공시지가) 좌측 세부메뉴 '부동산정보열람'클릭 후 '개별공시지가'탭 클릭
- (공동주택공시가격) 좌측 세부메뉴 '공동주택공시가격'클릭

⊕ 주택외 일반건축물
- (서울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 홈페이지 → ETAX 이용안내 → 조회 / 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서울이외 지자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회원권) 위택스(http://www.wetax.go.kr)
  *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자동차 가액)
- 보험개발원(http://www.kidi.or.kr)
  * 홈페이지 → 알림광장 → 차량 기준가액
  ※ 조회 횟수 제한(월 10회, 연 20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번호 필요
  *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 그 밖의 입목재산, 어업권: 관할 지자체에 문의

3-34 본인 및 배우자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대도시 기준으로 1억3천5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일반재산에서 공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은 부부 중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를 기준(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적용합니다.

3-35 토지가 등기부등본 상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건은 신청인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재산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명의인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36 수급자 명의로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아직 재산권이전이 실현되지 않은 법률행위이므로 수급자 명의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 가등기(假登記):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임
- 소유권이전 가등기: 이전등기(본등기)는 나중에 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를 할 때까지 가등기를 하면 그 사이 결정된 물권에 우선함. 또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에 대해 미리 가등기 해 두면 그 후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함

3-37 신청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들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들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권리자(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에 기록된 명의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반영)의 기본 원칙은 공적자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3-38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명의 토지 등을 재산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시 재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이며, 다만, 종중재산,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택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민원인 개인 명의의 토지이며, 다수의 공유재산으로서 제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행복e음에 조회되는 재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나 소유권 행사 제한 재산의 재산가액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은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 다만, 종중·마을공동 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통상 일반재산(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기준으로 재산 산정함이 원칙

* 개설주체가 개인인 사도(주택진입로 등)는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국도나 지방도상의 토지라도 명의가 개인일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국가의 재산권 행사 불가[사적용도가 아닌 공익목적의 수용의 경우, 국가가 매입 및 보상의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국가명의로 이전 우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비과세라는 이유로 소득환산액 산정시 제외하는 것도 부적절

-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대한 소유주 외에도 공익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나,
- 「기초연금법」은 개인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규정한 것으로 재산의 공익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소유주를 확인하여 재산 인정여부를 판단

3-39 얼마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아직 상속 등기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 명의 주택은 누구의 소유로 산정하나요?

미등기 재산은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를 해당 물건의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40 본인 명의로 된 교회건물을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에서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하여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산의 은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이 교회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법인단체 고유번호증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41 재개발 조합원이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등기상 소유자 지역주택조합)하여 구청에서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 신청인은 분양계약서도 없는 등 분양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산산정 제외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 납부자(행복e음)와 등기상(입증자료)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재산세가 부과된 아파트를 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권리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불이행 및 가처분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실소유주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 명의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43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본인에 해당되는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므로, 가등기권자의 지분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재산으로 전액 산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권자가 해당 주택 매입 시 일부를 투자했더라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하고 그 외 개인간 부채(사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등기권자가 투자한 금액은 부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44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과수원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종중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해서는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합유등기와 지분등기의 비교

구분	합유등기	지분등기
근거	「민법」 제272조	「민법」 제263조
의미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 필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내용	합유물은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화할 수 있음
표기	등기부등본 갑수(소유에 관한 사항)에 A씨 외 00명 또는 전체 합유자로 표기됨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에 관한 사항)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공유자 지분 00분의 0 이라 표기됨

3-45 신청인 명의의 토지가 마을 공동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해당 협의체 정관만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종중·문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한 경우와 해당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마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해당 협의체 정관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초 마을공동재산으로 출자금이 형성되었는지, 마을공동 목적을 위해 배당금이 사용되었는지, 그간 정관 변경 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46 집안의 장손으로 종중재산의 공동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종중재산도 재산에 포함하나요?

종중재산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본인의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우선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인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 비법인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해서는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금융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고유번호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하여 금융재산을 이체한 다음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유번호증 발급 불가 확인서류(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 등 고유번호 불가사유가 명시된 확인서)와 종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한 지위인계 사실, 재산의 내역·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차명거래이지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자,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3-47 요구불예금의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에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을 포함하나요?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에는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고른 값을 의미하고, '잔액'이란 금액이나 물품에서 일정한 액수나 양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한 기간 동안 입출금된 금액 차이의 합을 평균한 값을 말하는 것이므로, 3개월간 입금액 또는 출금액 전부를 합산한 총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정보의 한 종류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과 다르게 '총 납입액'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보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평균잔액'의 의미에는 금액의 누적치인 입금액 또는 출금액의 총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조사·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8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채권 액면가액(잔고증명서)과 해당 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실제 금융재산(금융감독원 조정서 상 조정금액)이 상이할 경우 금융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재산의 경우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을 적용함이 원칙이지만,

- 위 질의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금융감독원 조정이 완료되었으며,
- 아울러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수급자의 금융재산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결과와 달리 해당 채권의 최종 채권평가액(금감원 조정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증권사에 발행한 잔고증명서의 경우 최후배당에 의한 파산의 종료결정(청산) 이전에는 채권 취득 시 액면가액으로 조회됩니다.

3-49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자료로 잔고증명서가 가능한가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1주당 평가가액의 산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은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을, 제2항은 계산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및 주식발행기관은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주식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은 소명 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⑥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⑤ (생 략)

3-50 기초연금 수급자가 보험증권의 명의자(계약자)이고,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험상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산정하므로 보험금은 명의자인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수익자는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므로 조회된 보험금에 대하여 동 보험금의 수익자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가 보험계약자	→	**제3자인 보험수익자**	**(산정 방법) 수급자의 금융재산**

- 이에 추후라도 공적자료로 조회된 보험금의 계약자를 수급자에서 제3의 타인으로 변경 시에는 조회된 보험금은 수급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증여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수급자가 보험계약자	→ 명의변경	**제3자인 보험계약자**	**(산정 방법) 수급자의 기타증여재산**

- 다만, 수급자가 타인 명의의 보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본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제3자인 보험계약자	→	**수급자가 보험수익자**	**(산정 방법) 수급자의 금융재산**

3-51 사정상 부모님(수급자) 계좌에 입금한 자녀의 자금에 대해 당시 입금액 만큼 자녀에게 돌려주었으니 금융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적용으로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받은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적자료를 통하여 조회된 금융재산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차명·도명 계좌로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주 명의로 조회된 금융재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⑦ (생 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생 략)

3-52 등록장애인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3000CC 이상인 경우 재산 산정 시 해당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나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무관)이므로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가액에 상관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가액 등을 고려하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관련 재산산정 사례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노인과 아들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차량

⊕ 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 자식과 공동소유하는 일반차량: 전액재산으로 산정
- 소유차량 2대 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장애인 차량만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

⊕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3-53 리스·렌탈 자동차의 경우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리스·렌탈 자동차는 구매를 통한 소유가 아닌 계약에 따른 임차에 해당됨으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임차보증금(일반재산 환산율 4%)으로 산정합니다.

리스·렌탈 자동차의 명의는 리스(렌탈)사의 소유로 행복e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e음으로 반영되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통해 리스·렌탈 자동차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수급(권)자에게 성실 신고를 유도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리스차량 재산산정

⊕ 리스차량 계약 당시 보증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면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하고,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므로 리스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수급(권)자가 상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차량가액 100%를 적용
- 또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리스(렌탈)비용이 있다면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 등으로 철저하게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소득파악을 해야 함

3-54 실제 구매가격과 차량가액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정보 및 민원인 명의의 차량 특성 등이 반영되어 차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본인이 구매한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표준가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3-55 종교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명의의 차량을 생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해당 차량이 없다고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도들 이동용으로 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종교인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나지 않으므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

- 생업용 자동차 는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하여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3-56 자동차 산정기준에 불도저를 포함하나요?

불도저는 자동차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가 해당됩니다.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은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27.	(생 략)

3-57 증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증여재산의 산정기간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증여에 대한 재산산정은 노인의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여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여 수급자로 되는 등 부적정 수급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3-58 건물 매각 시 실제 매각대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기타(증여) 재산을 매각대금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건물, 토지 등 일반재산 평가를 공적자료에 의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재산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매각 시에도 처분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타(증여)재산 산정합니다.

-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이때,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징구바랍니다.

3-59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는 이유와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범위를 왜 공시가격의 50%내에서만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며, 특히 실제소유 여부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 실지명의정책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회되는 모든 자산을 본인의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사인간의 쌍방계약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확정일자제도를 통해 사문서의 존재 여부를 공공기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범위가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의 50%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역전 방지를 위한 조치로 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을 부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역전방지: 임대보증금을 모두 부채로 산정할 경우 임대인은 재산가액이 줄어들고 임차인은 모두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시가로 산정하나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보유가에게 오히려 유리한 현상이 발생

3-60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상가를 각 1채씩 임대하고 있고 본인은 시가표준액 3억원인 자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부채는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적계약으로 임대보증금액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적기관에 의한 확인·보증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복지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6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한 채에 한해서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

⊕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 채로 간주

3-62 본인 명의 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었는데 그 세입자가 아들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신청인과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를 과다계상하여 기초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63 주택취득과정과 대출금의 상환 등 소명자료에 의해 자녀의 부채 상환액을 본인의 부채 상환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자녀 명의의 부채이므로 본인의 부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주 채무자인 자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추심명령으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수급권과 이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상자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재산 산정시에는 재산 취득을 위한 자금의 출처,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예외]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타재산증가분으로 차감가능

① 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

※ 확인서류: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대위변제 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

② 사망한 배우자 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 등을 통해 부채까지 상속승계 받은 경우

* 한정상속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함

- 행복e음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및 부채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부채는 삭제되고 재산만 수급자에게 산입된 경우 포함
- 수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등기 완료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채도 상속받았다고 간주하여 기타(증여) 재산에서 차감

※ 확인서류: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등

[원칙]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가능

3-64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개인재산으로 상환한 경우 부채로 인정할 수 있나요?

기업대출을 개인(기초연금 신청인이며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이 상환한 경우 기타(증여)재산의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기타(증여)재산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채만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이 주 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등에 따른 부채상환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증 서류로는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확인서상 연대보증인을 확인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3-65 신청인이 매도한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채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 보유자산이 아닌 이미 처분한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거래내역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매도 당시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의 부채 처리방법은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 단, 이미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은 기타(증여)재산 처리 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증여 및 처분된 재산은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반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임대보증금 규모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확인 등 사인간의 문서 전반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곤란하기에 부채 인정은 불가합니다.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종전의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66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론(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대출은 개인의 담보평가 등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무보증, 신용상태만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성격으로 부채로 인정하게 되면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소득인정액 조사직전에 대출을 받는 편법 등으로 임시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줄인 후 수급자 선정 이후 되갚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오용·악용하는 부작용의 소지가 큽니다.

-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채무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수의 수급자와 일부 무분별하게 카드론 대출 등을 사용한 수급자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드론 대출 등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주로 기본재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제기되는 사항으로, 카드론 대출을 포함한 부채 범위 확대는 기본재산 이하 재산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할부금 연체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산정

3-67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수시 입·출금 계좌 중 대출이 가능한 계좌로, 요구불예금의 금융재산 산정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되므로 마이너스 대출(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68 신청인은 지인이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고, 연대보증인은 10여명 정도 됩니다. 원래 주 채무자인 지인이 사망한 경우, 연대 보증인으로서 채무 이행의무가 있으니 신청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신청인이 주채무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69 가족 간의 사채도 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부채로 인정할 수 있나요?

가족간의 사채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 부채로 보아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의 경우는 부채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조서가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위해선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70 개인 간 부채(사채)는 채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원금에 이자 포함해서 채무 금액이 결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부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원금만 부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등에 대해서도 대출 원금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공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3-71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도 되지 않고, 약 9천만원 상당의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을 부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부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의 일반재산 산정은 명의인을 기준으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억원 상당의 재산도 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재산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의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 판결문 및 화해·조정조서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채 종류에 따른 인정 여부

부채의 종류		부채 인정 여부	비고
금융 기관 대출금	본인 명의	○	
	연대보증인 표기	×	단, 주채무자인 경우 인정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개인 간 부채	법원 판결(결정) 있음	○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등 제출 시 인정
	법원 판결(결정) 없음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조서 제출 시에도 불인정
임대 보증금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	○	공적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인정 (전세권 설정 등기 및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인정)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임대차계약 체결	×	단, 2007년 10월 15일 이전 체결되었으며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신용카드 미결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카드대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 주택연금 포함)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3-72 주택(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액과 해당 주택(농지)의 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농지)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이므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농지)연금 수령 중인 주택(농지)은 일반재산에 포함해서 월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째 주택(농지)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 시까지 수령한 주택(농지)연금액 누계(60만원×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주택(농지)연금액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한국주택공사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
-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제도

3-73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나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에 따른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방법이 동일해야하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 제1항 제1호 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 제1항 제2호: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기초연금액 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1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및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이 불리하지 않나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급여 중 본인의 기여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공통적인 부분(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은 기초연금 급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이를 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세대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 이후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양 제도 간 중복되는 급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새대내·세대간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과 저부담-고급여에 따른 높은 급여 수익비를 제공받은데 반해, 무연금자는 고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간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 적용방식을 달리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4-2 국민연금 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다시 국민연금 급여 중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무연금자에 비해 이중적 차별이 있지 않나요?

국민연금 급여를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반영 요소가 달라 이중적 차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A급여액을 차감하는 것은 기초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포함)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 중 A급여액은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과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를 통해 기초연금과 유사한 소득재분배(사회연대에 따른 후세대 부담분)효과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3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해 이미 잘 이해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심사 숙고하여 지금까지 힘들게 가입해 오셨던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서 얻는 혜택과 더불어 2019년 4월 기준으로 최소 126,870원의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 253,750원만 받는 것보다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 또한, 2019년 4월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시는 어르신 중 약 81.4%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4-4 국민연금 급여 중 A급여액 및 A값은 무엇인가요?

A급여액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본인의 기여가 아닌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주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평균부분(A값)과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부분(B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3개년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결정되는 값입니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매월 50만원 수급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원으로 조회됩니다. 이때 가입자의 소득수준(3개년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A값)과 같은 급여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가입한 신청자라면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B급여액(자신의 소득비례금액)은 2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4-5 행복e음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급여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탈락자 및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급여액과 A급여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상담에 활용하면 됩니다.

행복e음에서 A급여액등을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급여액과 A급여액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복e음의 조회 경로

- 신청자 및 탈락자: 상담·신청〉신청관리〉신청정보등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 수급자: 급여 〉 급여대상자 관리 〉 국민연금 A급여액 연계수신현황

⊕ 행복e음에서 A급여액등을 확인하는 방법

- (1단계)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버튼에서 노인복지-기초연금 선택 시 [기초연금맞춤정보 안내] 표출
- (2단계) 기초연금맞춤정보안내 버튼 클릭시 팝업 생성
- (3단계) A급여조회 버튼 클릭시 국민연금급여액과 A급여액 실시간 확인 가능

⊕ 행복e음의 세부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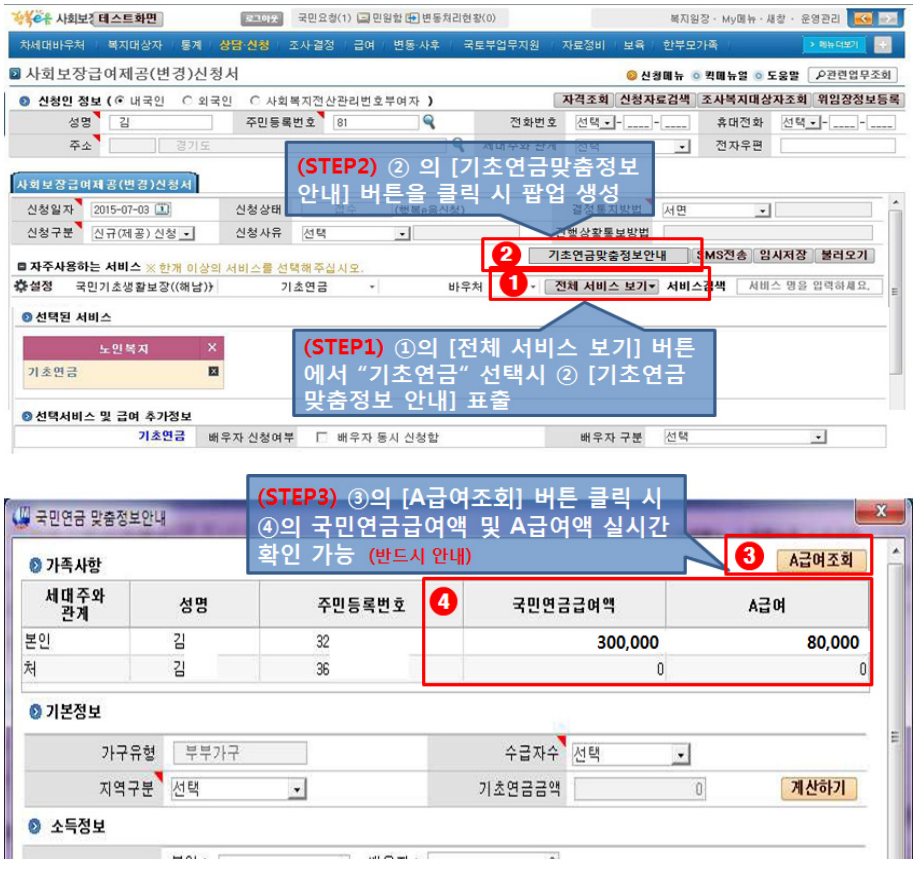

4-6 행복e음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급여액을 조회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나요?

행복e음에서 A급여조회 클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보낼 때 발송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2015년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 전체에 대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민연금 수급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발송합니다. 다만, 직역연금수급자 등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국민연금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현재 행복e음과 국민연금공단의 전산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행복e음에서 A급여조회를 클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e음을 통해 A급여조회 클릭한 사람에게는 중복안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한 사람 등에 대한 재신청 안내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초연금 상담·신청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A급여조회를 클릭하면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7 개인별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다른데 A급여액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급여액은 개인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수준(A값)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고, 가입기간이 속하는 구간의 소득대체율(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달라도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비례상수와 A값이 동일하므로 A급여액은 동일합니다. 반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같다 하더라도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별로 적용되는 비례상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다르나 A급여액이 동일한 경우

구 분		국민연금수급자	
		이○○	박△△
국민연금 가입이력	국민연금 급여액	약 44.8만원	약 55.4만원
	A값*	2,087,029원	
	B값**	200만원	300만원
	수급사유 발생일	2012년 4월	
	가입기간	97년 1월~11년 12월(180개월 가입)	
	A급여액	약 234,008원	
	예상 기초연금액	224,610원	

* A값: 물가를 반영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소득재분배기능)

** B값: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같은데 A급여액이 다른 경우

구 분		국민연금수급자	
		서☆☆	민◇◇
국민연금 가입이력	국민연금 급여액	62.4만원	
	A값	2,087,029원	
	B값	197.5만원	412만원
	수급사유 발생일	2012년 4월	
	가입기간	92년 1월~11년 12월 (240개월 가입)	98년 1월~11년 12월 (168개월 가입)
	A급여액	약 338,360원	약 238,533원
	예상 기초연금액	155,050원	238,530원

✓ 즉,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결정되고, A급여액 등은 개인별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A급여액의 특징은 이해하시되, 개인별 세부금액에 대해서는 행복e음상 'A급여조회'를 통해 안내바랍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B값)을 합산하여 2로 나누어 산정되므로, A값과 B값이 동일하고 노령연금의 평균연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A급여액은 평균연금액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 A값=B값인 경우: 평균연금액 40만원인 甲의 A급여액은 약 20만원 수준
A값〉B값인 경우: 평균연금액 40만원인 乙의 A급여액은 약 20만원 이하
A값〈B값인 경우: 평균연금액 40만원인 乙의 A급여액은 약 20만원 이상

4-8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계산 시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급여 중 그 성격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A급여액을 감안하여 급여의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A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되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동일한 수급자에게 동일한 A급여액이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거나 지급의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따른 감액 및 지급 연기 기간에 따른 가산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9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A급여액을 감안하여 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연금·연계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여부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유무로 판단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므로 A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의 지급 시 A급여액 계산은 연기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10 매년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인상폭(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4-11 1999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현재 7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A급여액은 얼마이며 기초연금 신청 시 얼마를 수급할 수 있나요?

A급여액은 가입시기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물론 국민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재분배 연금액은 그만큼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연도)	'88~'98	'99~'07	'08	'09	'10	(…)	'14	(…)	'28~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49%	(…)	47%	(…)	40%

4-12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이상의 급여 수급권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급여 선택이 있는 경우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여부는 선택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노령연금을 선택하신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은 선택급여인 노령연금과 미선택 급여인 유족연금의 20%를 지급받게 되나 기초연금액 산정 시 A급여액 계산은 노령연금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4-13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수급권자인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우선 간주하게 되어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임의계속 탈퇴 시 임의계속 가입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A급여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4-14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지연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년분의 분할연금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소득인정액은 지연청구 등으로 2개월분 이상의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전 소급분은 재산(기타일시금)으로 처리하고 1개월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분할연금 지연청구 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분할연금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미청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으로 국민연금(유족연금) 소급 지급의 경우, 2018년 12월에 수령한 전액(3,093,210원)을 재산(기타일시금)으로 처리하고 1월 지급된 연금 급여(238,450원), 월 지급 유족연금액은 공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4-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연금연계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인데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얼마를 수급할 수 있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노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연계노령연금의 A급여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16 기초연금액 산정 시 2/3라는 값은 어떤 의미인가요?

- 기초연금 기본산식 중 2/3는 A급여액의 조정 상수로 조정계수 설정을 통해 현재 재정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값입니다.

4-17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20% 감액 적용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하나요?

감액의 취지가 각각 상이하므로 둘 다 적용합니다.

-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 반면,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4-18 민원인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민적 정서, 대상자 규모,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바랍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수령자 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려는 취지이며, 국가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세부 심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4-19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인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연계감액되는 수급자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에서 가족수당처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19년 기준 380,625원)미만 인 경우도 감액되지 않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로서 국민연금급여액이 380,625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190,312.5원을 초과하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급여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상한액 (2019년 기준)

국민연금급여액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준연금액의 150% (380,625원) 이하	또는 (or)	기준연금액의 75% (190,312.5원) 이하	→	253,75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80,625원) 초과	이고 (and)	기준연금액의 75% (190,312.5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 (380,625원) 미만	→	126,875원 ~ 253,750원 사이
기준연금액의 200% (507,500원) 초과	이며 (and)	기준연금액의 150% (380,625원) 초과	→	126,875원 (부가연금액)

국민연금액 40만원(A급여 2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급여 수준

-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이며,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 초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126,875원~253,750원 사이로 결정

(A급여액 적용산식) 253,750원 - (2/3×200,000원)+126,875원 = 247,292원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 634,375원 - 400,000원 = 234,375원

- 각 산식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47,292원)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4-20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월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물가반영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2018년까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물가반영에 따른 연금액 조정시기가 매년 4월로 동일하였으나, 「국민연금법」 개정('19.1.15.)으로 2019년 1월부터 국민연금액의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졌습니다. 기초연금은 현행과 같이 매년 4월 조정됩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수급하는 소위 '동시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의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액 인상에 따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고, 4월이 되면 물가변동률 만큼 기초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물가반영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인상되어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경우(예: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반영으로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는 자)에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물가반영으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사례

⊕ 가정: '19.1월 적용 기준연금액 250,000원, '18년도 물가변동률 1.5%

⊕ 국민연금급여액이 369,750원~375,000원인 사람이 물가반영으로 기준연금액의 150%인 375,000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21 연기연금신청, 미청구 등으로 실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 국민연금연계감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실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수급권자)에 대해서도 A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1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분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산식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기초연금 지침은 국민연금수급권자(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구체화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60세(수급개시연령, 이하 동일) 도달을 모두 충족한 사람(수급권자)으로 미청구, 지급 연기중이거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4-22 국민연금 미청구, 지급정지 중인 사람에 대한 A급여액, 국민연금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 소득인정액 포함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A급여액 (B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노령연금	일반수급자		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지급률)	좌동	○
	미청구		예상연금액	좌동	×
	일시중지, 정지		정지 前 연금액	좌동	×
	조기지급		감액 前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미적용)	감액 後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적용)	○
	연기	연기 중	연기 前 연금액	좌동	×
		연기종료	가산 前 연금액	가산 後 연금액	○
분할연금	수급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A급여액 균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균분	○
	미청구자		미 산정(→기준연금액 적용)	좌동	×
	지급정지자		정지 前 연금액	좌동	×

국민연금 관련 주요 용어

⊕ 반환일시금 반납(반납)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시 신청가능한 제도로 반환일시금 수령 후 국민연금 재가입(가입자 자격 재취득)이 불가능하나, 2000.12.31.까지 반환일시금을 특례 지급받은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재가입 및 반환일시금 반납이 가능하도록 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미가입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 최대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급연령시기 도달 최대 5년전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부 감액*되어 평생 지급하는 연금

* 월 0.5%, 1년 6%, 5년 최대 30% 감액

⊕ 분할연금

-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의 수급가능연령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 임의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자.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함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자를 의미.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다수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통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5-1 기초연금을 수급 받다가 수급을 포기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중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포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을 제출하면 수급권 상실처리가 완료되고 수급권을 포기한 달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급여 생성 이전에 수급권을 포기하시고 포기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부터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5-2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권 포기를 원하는 경우 그 포기서 작성을 시설장이나 자녀가 대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권 포기는 수급자가 수급권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수급권 포기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거동불가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본인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수급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3 기초연금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민원 처리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기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법」 제13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기산일은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일이며, 종기일는 「민법」의 도달주의와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보장기관이 결정한 날이 아니라 수급권자에게 통지서가 도달된 날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4 기초연금을 지연하여 신청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미신청월의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만 65세 도래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도래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신청월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5-5 기초연금을 7월 31일 신청한 후 조사완료하여 10월에 적합결정하였으나, 9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 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자 결정 이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부적합자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6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연금 신청이 늦어진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급여액을 소급 지급할 수 있나요?

소급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므로 신청 전의 수급기간에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문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사전 신청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5-7 기초연금을 신청한 부부가 선정기준 초과로 부적합 결정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부적합사유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금융재산정보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단, 부득이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행복e음 상담내역에 동의여부, 제공받은 자, 제공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동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 자료 조회 자체에 대한 동의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 통보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서식5호)'를 통한 서면통지가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⑤, ⑦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8 거주불명등록 후 기초연금 급여가 지급정지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거주불명등록 된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합니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재개합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 따라서, 지급정지 사유에서 다시 수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건전성과 수급자격의 적정정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기초연금법」 제18조(신고)에 근거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5-9 기초연금 지급정지자(거주불명등록자, 재소자 등)의 정지사유 해소 시 지급정지기간 중의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 하여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지사유가 해소된 뒤 일정기간 신고기간이 지난 후 변경 신고한 경우라도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금고형 복역 후 2019년 3월 변경 신고 시에 2019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5-10 수급자가 7월에 거주불명등록자가 되어 10월에 급여를 일시 정지 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이후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나요? 또 거주불명등록자가 급여 지급정지 기간 이후 다시 연락이 된 경우 지급정지기간 중의 급여도 다시 소급하여 지급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이 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해야 함에도 지급정지를 늦게 한 경우 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입니다.

- 거주불명등록자가 급여를 다시 수급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재개합니다.
-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되어서 급여 지급정지 기간 이후 다시 연락이 되어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소급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5-11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소급 지급을 할 수 있나요?

행정착오로 인하여 중지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행정청 직권으로 기초연금의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결재 등을 통해 책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5-12 확인조사 시 입증서류 미제출 또는 조사·질문의 기피 등으로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추후 관련서류 제출 또는 본인 소명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의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소급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지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으셔서 인용 여부에 따라 소급 지급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하고,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재개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①~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5-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일을 현행 25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일인 20일로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지급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소득·재산에 필요한 기간 등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날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25일이 지급일입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⑥ (생 략)

5-14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정황상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서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한 부양의무자 또는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가 인정됩니다.
- 정기적 생활비 지급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본인) 확인서 징구를 통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①~③ (생 략)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2.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⑤~⑦ (생 략)

5-15 기초연금 신청 이후 주소지 변경 과정에 신청서류 미이첩으로 기초연금 미지급 시 기초연금 지급 해당 지자체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시: '19.1월 A시 신청 → '19.2월 B시 전입 → '19.6월 A시 재전입 → '19.7월 보장 결정)

주소지 변경 시 관련서류는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을 전출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를 이첩하지 않아 수급자 결정이 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초 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급여를 확정한 보장기관에서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관련 「기초연금법」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 등을 결정한 후,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관련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함은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행복e음에서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16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시설에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편의와 관리상의 이유로 시설에서 그 입금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이 수급자 본인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사정 등으로 직접적인 통장관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대리수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수령한 후 수급자를 위해 활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간의 사용명세 등 본인의 소명을 받아 부정의 소지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이 시설을 상대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등 타 법령에 속한 사항으로 「기초연금법」을 통한 요구 권한은 없습니다.

5-17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한 후, 다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 계좌를 변경신고하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18 행복지킴이 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통합 사용할 수 있나요?

-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185만원을 압류금지 생계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1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한 특례 적용 대상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이의신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최소화하고, 전국 표준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이의신청위원회 상정 가능 안건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재산가액·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사항

⊕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범위 관련 사항
- 사실이혼을 주장하나,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급자동차 중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사항

⊕ 기타(증여)재산 산정 관련 사항
-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복구비용의 본인소비분 인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사업부도 등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곤궁하여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등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6-2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수령하지 못해 부적합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부적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수급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3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9호)'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후 결과 보고서(임의서식)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의뢰 전에 이의신청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다만,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공통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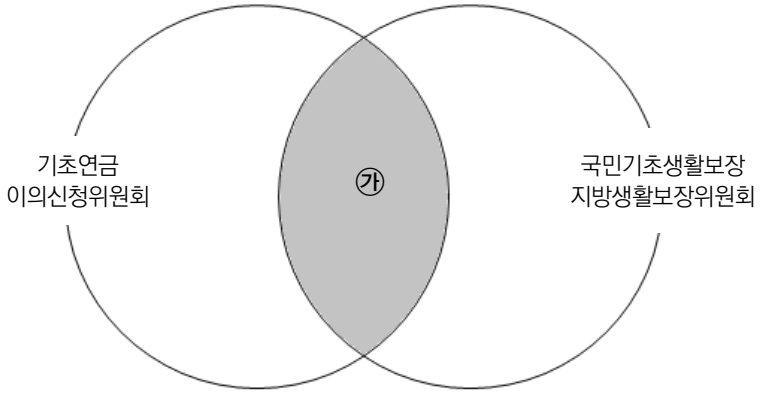

⊕ 이의신청 주체의 이의신청 시에 급여결정·변경·지급정지·수급권 상실 등 처분에 대한 사항

⊕ 이의신청 주체의 이의신청 시에 재산가액의 산정 및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특례 적용을 위한 사항

- 사실이혼을 주장하나,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급자동차 중 생업용 자동차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기타(증여)재산 산정에 관련 사항
  -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 인정 여부
  -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곤궁하여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등
-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 이의신청 주체의 이의신청 없이도 체납된 환수금의 채권이 결손처분 기준에 해당된 경우

7 수급자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나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수급권을 상실하고,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7-1 2017년 4월에 수급자로 책정, 같은 해 6월에 배우자가 신청하여 부부2인 동시 수급 중 2018년 4월 법적 이혼을 하고 2019년 2월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으로 인한 변경 신고한 경우 단독가구로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적 이혼을 한 2018년 4월까지 부부2인 수급가구로 적용하고 다음 달인 2018년 5월부터 단독가구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은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지급 반영시점이 달라집니다. 인적사항 변동(사망, 국적상실, 직역연금수급권의 발생, 혼인관계의 변경 등)의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소득·재산 및 국민연금관련 사항 변동의 경우 본인신고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부터 적용합니다.
- 이혼은 인적사항 변동으로 변동사항(이혼판결 또는 협의일)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인 2018년 5월부터 단독가구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7-2 사실이혼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대상자의 사실이혼 의사와 실제 별거 중임을 확인한 경우 사실이혼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단, 국민연금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기초연금에서 사실이혼을 인정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서로 상이한 경우 발생)

기초연금 관련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확인한 경우 사실이혼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 2016년 1월 11일 이후 기초연금수급자가 사실상 이혼이 인정되어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사실이혼 배우자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PS
7-3

사실이혼 확인조사 시 양 당사자와 유선을 통해 사실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주관적요건), 현장확인을 위해 방문일정을 정하려 면담을 하였으나 수급자의 사정(근로활동 중, 요양기관입소 등)으로 객관적 요건 확인이 어렵거나 요건 충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자를 통한 인정·불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출장조사를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 확인자로부터 확인 후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과를 등록하면 됩니다.

객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수급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이성의 물품 등을 확인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현지출장 시 사실상 혼인생활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
- 수급자가 기타사유 등으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7-4 사실이혼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는 주소지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 당사자도 사실이혼임을 주장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양 당사자가 사실이혼에 모두 동의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사실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이)혼 조사관련 유의사항

- ⊕ 법률상 이혼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동의)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로 처리 불가능
- ⊕ 세대분리 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 불인정

7-5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된 수급자가 국내 입국하여 기초연금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개시점은 언제인가요?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e음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소득·재산 변경사항 확인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합니다. 기초연금 재개 시점은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입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기초연금법」 제18조(신고)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③ (생 략)

7-6 해외체류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신청이 해외체류 기간 60일 경과 전이나 결정이 60일 경과 후인 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체류가 60일이 경과되지 않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결정이전에 60일이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달까지는 지급하되, 60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 됩니다.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 날입니다.

국외체류 기간 처리방법

⊕ 2019년 5월 2일 출국하여 2019년 10월 2일 입국하는 경우

- 출국일 다음 날인 2019년 5월 3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7월 1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에 지급정지한 후,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1월부터 급여 재개

7-7 실종 후 사망자의 시체검안서 상 사망일이 2019년 2월이고, 사망신고일은 2019년 4월 11일 때,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일을 사망일과 사망신고일 중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사망추정일이나 사망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권의 상실을 사망신고한 날이 아닌 사망한 날로 적용하는 것은 타 복지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처리절차

구 분	적용시점	처리절차
단독가구 수급자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수급) 수급자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단독가구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수급)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 급여 변경신고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단독가구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삭제하고, 미등기상속재산 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만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별도의 변경신고는 불필요)

7-8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8년 12월에 교정시설에 입소하였고 2019년 3월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다면 지급정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달의 다음 달인 '19.4월부터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 「기초연금법」 제16조에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수급자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변동사항의 지급반영 시점

적용방법 \ 정보종류		인적 사항	소득·재산 사항	국민연금 관련사항
지급 반영 시점[1]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발생한 다음 달부터	확인(통보)된[2] 달부터	확인(통보)된 달부터
	수급권 상실	발생한 다음 달부터	확인(통보)된 다음 달부터	-
	지급 정지 및 지급재개	발생한 다음 달부터	-	-

1) '지급반영 시점' 이란 변동사항을 급여지급에 반영하는 시점을 의미
2) '확인(통보)시'는 본인신고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을 의미

7-9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법」 제16조에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법원의 심급제도(3심제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종 선고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7-10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과 실제 수감일이 다른 경우 지급정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과 실제 수감일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지합니다.

7-11 벌금형 선고 후 벌금(또는 과료)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무하는 경우 지급정지 할 수 있나요?

벌금형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결에 따라 교정시설에 단기간 입소하게 되는 구류(30일 미만)형인 경우에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12 부모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며 최근 자녀들 간 기초연금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나 생각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 당분간 지급정지 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6조에 해당되는 지급정지 사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사유로 기존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7-13 기존 기초연금 부부1인 수급가구였으나, 만 65세 도래한 배우자가 2019년 4월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6월에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나왔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본인)가 소득·재산 변경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공적자료를 조회했으므로 공적자료 근거로 적용시점은 행복e음 변동사항을 확인(통보)된 달에 적용하시고, 지급기준 역시 공적자료 근거로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급여 지급이므로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6월말까지 지급하고 수급권 상실 처리(지급 중지)해야 합니다.

NPS 7-14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시 타인계좌로 수령하고 있음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계속하여 타인계좌로 수령하길 원하지만, 타인계좌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타인계좌 명의의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급여계좌는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여 타인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적합-대리수령사유 유지'로 등록하면 됩니다.

- 대리수령 사유 없이 배우자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였던 부부2인 수급가구의 예금주가 사망하여 확인대상자 명부에 발췌된 경우에는 자료 불일치로 등록하면 됩니다.

NPS 7-15 단독가구인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가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계속 수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리수령인이 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과등록 및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 및 소급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조사 결과는 자료 불일치로 등록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 및 소급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하는 사실조사 내용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계좌 변경신고 안내가 필요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 및 소급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확인조사 결과통보하시기 바랍니다.

NPS 7-16 배우자 부재 확인조사 시 관련기관의 회신공문을 통해 부재중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출장확인을 해야 하나요?

가출·실종 후 귀환하였으나 수급자가 취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공적자료를 통해 부재사유가 지속되고 있는지와 현장 출장을 통해 실제로 수급자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단독가구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7-17 전년도 사실이혼 확인대상자로 공단에서 부적합(사실이혼 해소-법률상 이혼)으로 통보되었고 가구유형도 단독가구로 관리되고 있는데 매년 재발췌 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행복e음 통합조사표 상 가구구성사유를 변경 처리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은 사실이혼과 법률상 이혼 모두 단독가구에 해당되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구구성사유는 사실혼, 사실이혼, 주민세대로 구분되어 있어 이 경우 가구구성사유를 사실이혼에서 주민세대로 변경해야 합니다.

  * 경로: 행복e음〉조사·결정〉결정〉통합조사 및 결정〉가구 구성원변경〉조사가구구성

7-18 채무불이행 사유로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의 본인인지 요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치매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대리수령사유에 맞춰 재확인합니다.

- 건강상 문제로 본인 인지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대리수령사유(변경 전: 채무불이행 → 변경 후: 치매 또는 거동불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관련 신청 및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인지요건을 새롭게 확인하고, 정확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행복e음 계좌번호 변경화면에서 예외계좌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행복e음〉상담신청〉신청관리〉신청정보등록〉통합·개별 각 신청화면 계좌번호관리

7-19 환수대상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납부대상자가 될 경우 자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징수 업무 수행 시,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 같은 법 제152조의2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 략)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4. (생 략)

7-20 기초연금 수급자로 보장받던 중 직역연금(사학연금) 정보가 추가 통보된 경우 수급자격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하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사학연금 일시금 수령자)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하나, 신청조사 시 일부 정보(사학연금 일시금 자료)가 누락되어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장중지하고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액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인용)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기초연금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인용)

7-21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서 만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기초연금을 환수하나요?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만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 처리합니다. 정정 전 급여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처리방법

⊕ 주민등록번호(연령) 상향 조정 시

- 2019년 1월 15일 연금신청, 2019년 8월 25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상향)된 경우

【1943년 4월 1일 生(76세) → 1941년 4월 1일 生(78세)】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도 만 65세 이상으로 기 연금 수급 중(2019년 1월~)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등 별도 조치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연령) 하향 조정 시

- 2019년 3월 15일 연금신청, 2019년 8월 25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하향)된 경우

【1954년 3월 10일 生(65세) → 1956년 3월 10일 生(63세)

→ 2019년 3월~8월까지 기 지급 된 연금은 환수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 처리

7-22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하나요?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7-23 사업장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의 부탁(근로소득이 조회되면 기초연금이 중지)으로 급여를 1년 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공적자료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후 대상자가 사업장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여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대상자를 부정수급으로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환수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8조(신고)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소득·재산의 변동 신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의 변동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31조(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조사의 원칙에 따라 소득·재산·인적사항 등은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소득·재산 사항은 공적자료 확인(통보)일, 인적사항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았으나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결정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시점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7-24 환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환수금의 경우 납부방법은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므로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 제도를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가급적 결정 통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하나, 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상계 불가합니다. 환수금 상계처리 시에는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환수금의 결정·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7-25 「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에서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목적의 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7-26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된 기초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법정상속인을 납부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다수이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09조에 의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2명이상일 때에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27 환수대상자가 사망하여 납부의무자가 된 법정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환수대상자가 사망하여 납부의무자가 법정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인이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에서는 환수금 납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 역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에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 략)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 타 지역으로 전출상태인 환수대상자의 경우 전입지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9조에서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서 환수토록 규정하고,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출지 관할 지자체에서 주소지 변경 등으로 환수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의 환수금과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전입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환수금의 상계 처리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7-29 A지자체에서 부부수급을 하다가, 수급자는 교도소 수감이 되고 배우자는 B시로 전입한 경우 위 부부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부당이득 확인은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A지자체에서 합니다. 다만, 전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울 경우 A지자체에서 B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여 결정합니다.

7-3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급권이 상실되나, 수급권자에 해당하거나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7-31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를 2019년 7월에 하였습니다. 이자를 가산할 경우 환수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 이자의 계산기간은 해당 기초연금을 부당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2014년 9월, 10월 각각)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2019년 6월)까지입니다. 이자의 계산방법은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에 산입한 후 이자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 이자율은 해당연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 연도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4년도 연 2.4%, 2015년도 연 2.0%, 2016년도 연 1.4%, 2017년도 연 1.1%, 2018년도 연 1.6%, 2019년도 연 1.8%

- 환수금액은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기초연금액 400,000원(200,000원×2개월)과 이자액 31,680원을 가산한 431,680원입니다.

〈이자의 계산방법〉

구 분	이자 적용 기간	이자 계산식	산출 이자액 (십원미만 절삭)
2014년 9월 부당지급분 이자 (2014년 9월~2019년 6월)	2014년 9 ~12월	200,000원 × 0.024 × 4/12	1,600원
	2015년 1~ 8월	200,000원 × 0.020 × 8/12	2,660원
	2015년 9~12월	204,260원 × 0.020 × 4/12	1,360원
	2016년 1~8월	204,260원 × 0.014 × 8/12	1,900원
	2016년 9~12월	207,520원 × 0.014 × 4/12	960원
	2017년 1~8월	207,520원 × 0.011 × 8/12	1,520원
	2017년 9~12월	210,000원 × 0.011 × 4/12	770원
	2018년 1 ~8월	210,000원 × 0.016 × 8/12	2,240원
	2018년 9~12월	213,010원 × 0.016 × 4/12	1,130원
	2019년 1~6월	213,010원 × 0.018 × 6/12	1,910원
2014년 10월 부당지급분 이자 (2014년 10월~2019년 6월)	2014년 10~12월	200,000원 × 0.024 × 3/12	1,200원
	2015년 1~ 9월	200,000원 × 0.020 × 9/12	3,000원
	2015년 10~12월	204,200원 × 0.020 × 3/12	1,020원
	2016년 1~9월	204,200원 × 0.014 × 9/12	2,140원
	2016년 10~12월	207,360원 × 0.014 × 3/12	720원
	2017년 1~9월	207,360원 × 0.011 × 9/12	1,710원
	2017년 10~12월	209,790원 × 0.011 × 3/12	570원
	2018년 1~9월	209,790원 × 0.016 × 9/12	2,510원
	2018년 10~12월	212,870원 × 0.016 × 3/12	850원
	2019년 1~6월	212,870원 × 0.018× 6/12	1,910원
이자액 합계			31,680원

7-32 수급권 상실로 수급권이 없는 자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환수결정일은 2019년 9월 2일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권의 상실 등 수급권이 없는 자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환수대상입니다. 수급권이 상실된 기간 동안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2014년 8~9월)은 전부 환수 범위에 속하나,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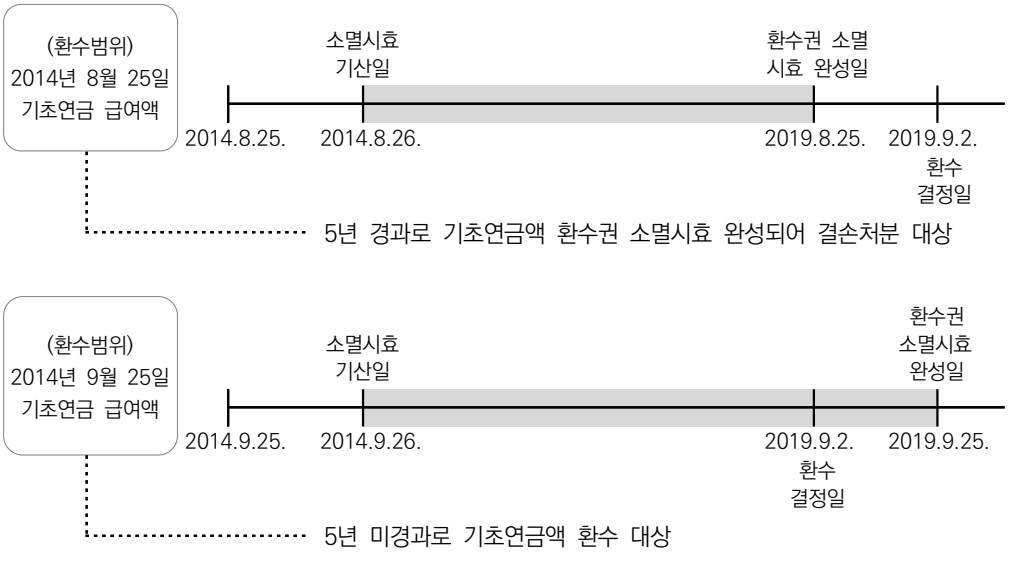

- 5년 경과로 기초연금액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년 8월 기초연금 급여액은 결손처분 대상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4년 9월 기초연금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환수결정시점으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은 결손처분 대상이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재기산일

중단사유	재기산일	비 고
최초고지 및 (최초)독촉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은 최초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일부납부,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 날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압류해제일의 다음 날	

7-33 기초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 건으로 공적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나, 부정수급 신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서류(소득관련)를 근거로 부정수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의 변동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기초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소득·재산·인적사항 등은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소득·재산 사항은 공적자료 반영(확인)일, 인적사항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았으나 부정수급 신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서류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환수결정 할 수 있습니다.

7-34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급자(위임자) 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본인 자필 서명)와 제출처, 제출용도 등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행복e음 상담내역에 기록·관리해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 수급자가 위임한 경우가 아니고 타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필요에 의해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의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사망자, 중지자 등이 사후 수급 이력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복e음 전산기록을 확인하여 보장기관 내부 결재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증명서 발급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으로 즉시 발급 가능

증명서 발급하기 → 증명서 발급 서비스(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선택 →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 신청 정보 입력 → 발급내역조회 증명서 출력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온라인신청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

8 국가부담금의 관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100~90/10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8-1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와 지방비의 재원부담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기초연금 재원은 국비(국가분담금액)와 지방비(시·도 분담금+시·군·구 분담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고부담금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40~9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율 평균은 2017년 76.6%, 2018년 77.0%, 2019년 77.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른 차등보조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보조율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재정여력은 있고 기초연금 수요가 낮은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이 책정되고, 반대로 재정여력은 부족하고, 기초연금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시·도와 시·군·구의 재정분담 비율은 노인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생 략)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④ (생 략)

〈별표 2〉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가. 산식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	가.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수}}{\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 나.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9 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또는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 발생 신고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각종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신고하여야 한다.

9-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1호-공통서식[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7.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❶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	
						전자우편	

❷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4]: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5]:_____, _____

❸ 부양의무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❹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❺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❶ 신청인 작성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기본 인적사항 기재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인지 확인 후 행복e음 입력 관리

❷ 가족사항 작성
- 기초연금수급 희망자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기초연금수급 희망자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인적사항 작성

❸ 배우자 관계 확인
- 해당자에 한하며 단독가구인 경우 체크하지 않음
- 배우자 관계 여부는 수급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체크
- 사실(이)혼 해당자인 경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추가 제출

❹ 급여계좌 내역 작성
- 부부 2인 수급의 경우 각각의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신청가능
- 「기초연금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

❺ 통지방법 선택
- 기초연금 지급결정통지서의 수령방법으로 반드시 체크 필요

[2 면]

❻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❼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 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❽ [ ]

〈 유 의 사 항 〉 ⑨	확 인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9.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1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⑩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❻ 보장구분 선택
- 기초연금 상담 시 타 복지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타 복지급여 체크

❼ 기초연금만 신청할 경우
- '노인'란의 '기초연금' 체크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배우자 동시신청'도 체크

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안내 후 확인 체크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❾ 유의사항 안내 후 확인 체크
- 신청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확인 체크

❿ 신청서 서명 또는 날인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원칙
- 인감도장도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서명을 요하는 모든 작성 서류* 동일하게 적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등

- 내방인에 따른 서명 예시

• 본인 서명 : 단독가구 1인이 내방하여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단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 서명 및 배우자 대리 서명 : 부부2인 동시신청자 중 1인만 내방하여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민유짱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민유짱 (서명 또는 인)
• 부부모두 서명 : 수급희망자 2인 모두가 내방하여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나신희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김복지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1인만 신청 시) : 대리인(6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내방하여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오주무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부부2인 신청 시) :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자녀 등)이 내방하여 부부2인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나종식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나종식 (서명 또는 인)

[3 면]

<table>
<tr><th colspan="4">〈안내사항〉</th></tr>
<tr><td>❶
처 리
기 한</td><td colspan="3">–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td></tr>
<tr><td rowspan="8">관 계
법 률</td><td>보장구분</td><td colspan="2">해당 법률</td></tr>
<tr><td>기초생활보장</td><td colspan="2">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td></tr>
<tr><td>영유아</td><td colspan="2">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td></tr>
<tr><td>아동·청소년</td><td colspan="2">초·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td></tr>
<tr><td>❷ 노인</td><td colspan="2">기초연금법</td></tr>
<tr><td>장애인</td><td colspan="2">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td></tr>
<tr><td>한부모가족</td><td colspan="2">한부모가족지원법</td></tr>
<tr><td>기타</td><td colspan="2">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td></tr>
<tr><td colspan="2">❸ 신청시 구비서식</td><td colspan="2">❹ 추가제출서류</td></tr>
<tr><td>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td><td>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td><td colspan="2" rowspan="2">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td></tr>
<tr><td>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td><td>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td></tr>
<tr><td>❺ 제출하는 곳</td><td colspan="3">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td></tr>
</table>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❶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❷ 기초연금 관계 법률은 「기초연금법」

❸ 구비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제출

❹ 추가 제출 서류
- 소득: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타: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부채 사항 일괄 확인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❺ 제출하는 곳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4 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❻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❽ 감면 서비스	[ ] TV수신료 면제 [ ] 전기요금할인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도시가스요금(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 (열사용자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휴대전화요금할인 신청시)

❾ 가족사항	신청인 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❿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안내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의 접근권 보장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8년 7월 13일부터 통신요금감면 실시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으로 월 최대 1.1만원 감면 가능

❻ 자격구분으로 “기초연금” 체크

❼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

❽ 휴대전화요금 체크
- 이동통신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감면 될 수 있음
- 보장별 신청가능 감면서비스 (2019.2.19.기준)

감면서비스 / 보장구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휴대전화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역난방요금 할인
기초연금	X	X	O	X	X
생계·의료급여	O	O	O	O	O
주거·교육급여	X	O	O	O	O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제외)	X	O	O	O	O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X	O	O	O	O
차상위계층 확인	X	O	O	O	X

※ 2개 이상 보장 동시 신청 시 감면율이 높은 보장으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신청

❾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추가 기재 가능

❿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원칙

9-2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2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❶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❷ 가구원 성명[1]						
❸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❹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기구류(원) □ 기타(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❺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❻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항목 작성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소득·재산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음영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적용 될 수 있음을 안내
- 소득·재산신고서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통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❶ 소득·재산 신고서의 구분사항 체크
- 기초연금 신규 신청 시: 신규
- 기초연금 수급 중인 자가 소득·재산의 증감 발생시: 변경

❷ 가구원 성명 기재
-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본인
-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만 65세 미만자 포함)

❸ 소득 신고
-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사적이전소득(무료임대)에 체크
- 무료임대인 경우 유선 등을 통해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상담내역 기록

❹ 재산사항 신고
- 각 항목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작성
- 재산산정에서 제외 되는 차량일 경우 각 사유에 따른 추가 징구 서류 필요

❺ 부채 신고

❻ 신고인 서명
- 본인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등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
- 다만,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수급희망자 본인의 서명 필요

9-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서식 3-공통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4.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❶ 본인	나 신 희	540902 - 2XXXXXX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❷ 세대주와의 관 계	❸ 동의자 성 명	❹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❺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❻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본인	나 신 희	540902 - 2XXXXXX	나 신 희	나 신 희
배우자	김 복 지	541124 - 2XXXXXX	김 복 지	김 복 지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❼ 2019년 09월 02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시 반드시 네모 칸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 네모 칸을 벗어나는 경우 행복e음 스캔등록 검증 시에 인식오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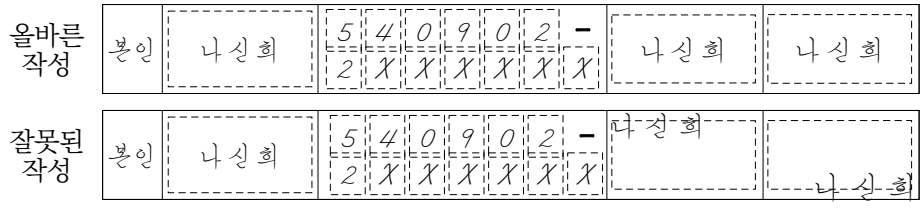

❶ 세대주 인적사항 작성
- 기초연금 수급희망가구의 세대주 인적사항 기재

> • 세대주가 본인(단독가구)인 경우
> → 관계에 '본인' 기재하고,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 • 세대주가 본인(부부가구)인 경우
> → 관계에 '본인' 기재하고, 본인 인적사항 기재
> • 세대주가 배우자(부부가구)인 경우
> → 관계에 '배우자' 기재하고,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

❷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와 기초연금 수급희망가구 세대주와의 관계
-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본인, 부부가구일 경우 수급 인원과 관계없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작성

❸,❹ 동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❺ 금융정보제공동의 서명
- 반드시 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이 있어야 함(※ 막도장 불가)

❻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 서명
- 다만, 통보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토록 안내

❼ 네모 칸에 연월일 반드시 기재

9-4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서식4호] 〈개정 2015.1.1.〉

❶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동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❷ 주 소			❸ 연락처	집(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❹ 주 소			❺ 연락처	집(사무실)	
					휴대전화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❻

기초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❶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기본인적사항 기재

❷,❹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됨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 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❸,❺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❻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

9-5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서식9호-공통서식[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4.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❶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❷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❸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❹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❺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❻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❽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⑨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❶ 이의신청을 원하는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❷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기재

❸ 이의 있는 처분(미해당, 감액결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구분하여 체크

❹,❺ 처분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재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 '각하' 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❻ 처분내용 및 통지된 사항 기재

❼ 처분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

❽ 이의신청을 원하는 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

9-6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10호-[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❶ 연금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❷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내 용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❸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❹ 위임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위임자(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본인 및 배우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❶,❷ 수급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작성

❸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등 작성

❹ 수급희망자(위임자)의 서명 및 연락 가능한 본인(위임자)의 연락처 반드시 기재

대리 신청에 따른 위임장 접수 시 확인사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관계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
- 수급희망자 본인(위임자)에게 반드시 유선확인하고 그 내용을 상담내역에 기록
  - 기초연금 신청 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신청서 등 자필 한글정자 서명)
  -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서류 징구통해 확인
- 수급희망자 본인의 위임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9-7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11호-[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❶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❷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❸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❹[ ]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입니다.

❺(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❻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모두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 불가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 필요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❶,❷ 수급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작성

❸ 수급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

❹,❺ “[ ]”란에 “[√]” 체크 및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❻ 수급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반드시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지장) 사용

9-8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식12호-[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❶ 지급대상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❷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❸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❹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❺ 대리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연금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❻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승인서

지급대상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대리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위와 같이 기초연금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연금의 사용목적 및 타 용도 사용금지 등 안내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리수령 신청·접수 불가

❶ 신청인(원 지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기재

❷ 대리수령 신청의 사유 확인 후 체크하며, 각 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 아래 참조

대리수령(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인정 사유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서식 12호)
- 수급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
- 예외적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❸ 대리수령 지급 기간 기재

❹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❺ 대리수령 가능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지 확인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받을 계좌를 작성

❻ 신청인 본인(또는 후견개시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과 대리수령인의 서명 모두 기재

9-9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13호-[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❶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정기준 지급순위 [ ] 배우자 : 1순위 [ ] 자녀(배우자 포함) : 2순위 [ ] 부모 : 3순위 [ ] 손자녀(배우자 포함) : 4순위		동순위자 ( )명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❷ 미지급 기초연금 내역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사망일	청구액	미지급 기간 ( )개월 [년 월 ~ 년 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❸ 동순위 수급권자	①				
	②				
	③				
	④				

❹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주소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합니다.

❺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 부합 [ ] 미부합 2. 지급순위 : [ ]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4순위 3. 동순위자 : ( ) 4. 기타 :

24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구권자가 우선순위자로서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함
- 미지급 기초연금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에 입금

❶ 청구인의 기본인적사항 및 지급받을 계좌, 지급순위 등 기재

❷ 사망자의 기본인적사항 및 사망일, 청구금액, 미지급 기간 등 기재

❸ 청구권자가 배우자가 아니며,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다수인 경우 기재하고, 동순의 수급권자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서명 반드시 기재

※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 순위권자의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청구에 따라 각각 지급

❹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기본인적사항 및 청구인과의 관계 기재

❺ 청구인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 필요

9-10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14호-[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❶ 수급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❷ 수급권 상실사유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상실사유 발생일

※ 아래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❸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주소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합니다.

❹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❺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❶ 수급자 본인의 기본인적사항 기재
-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❷ 상실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체크하고 상실사유 발생일 기재
-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❸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수급자와의 관계 기재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❹,❺ 신고인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 필요

수급권상실 사유에 따른 지급기준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 선정기준액(소득·재산) 초과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연금 지급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9-11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서식19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재 지)			
	수급자구분	□ 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1인 수급 □ 2인 수급)		
용 도				
제 출 처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발급
(메뉴위치) 상담신청 ➡ 증명서 ➡ 증명서 발급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수급자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신청으로 즉시 발급 가능(이때, 수급자 본인확인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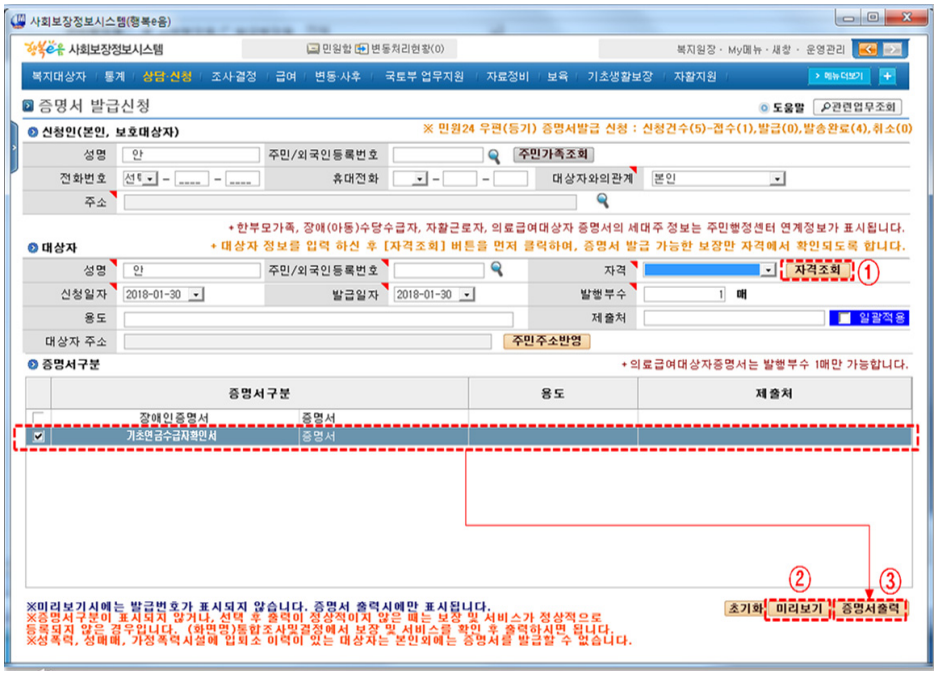

① 신청인 및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입력 후 [자격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출력 가능한 자격을 조회

② 조회 된 목록에서 한 건을 선택하고,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건의 발급 내용 확인

③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 항목에 체크 후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발행(단, 증명서 목록에서 증명서 선택은 한 건씩만 가능)

9-12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서식20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❶ 신청자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❷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❸ 본인은 배우자 _____와 _____년부터 ___년째 □ 사실상 혼인, □ 사실상 이혼 관계이며, 추후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징수 및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자(수급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사실상 혼인(이혼)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❹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❺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사실상(이)혼 상태에 동의해야 하며,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등)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서식20호)」 징구

●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나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배우자 동의 여부 및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갈음하여 처리 가능

❶ 수급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❷ 수급자의 사실(이)혼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❸ 사실(이)혼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이혼)기간 기재 후 신청자(수급자) 자필 한글 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지장) 날인 필요

❹,❺ 사실(이)혼임을 증명하는 확인자(자녀, 필요시 이·통·반장) 2인의 인적사항 및 자필 한글정자 서명 반드시 기재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사실 이혼한 경우

• 사실이혼의 경우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행복e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한 달을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로 보아 신고한 달에는 부부 2인 수급기준으로 연금 지급

-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 달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

9-13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21호]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❶ 성 명		❷ 생년월일	
	❸ 주 소			
	❹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❺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❻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_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❼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❽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❾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❶,❷,❸ 수급자(수급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❹ 신청자(수급자)와 임대인의 관계 체크

❺ 신청자(수급자)와 임대인의 동일 주택 거주 여부 체크

❻ 사용현황(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

❼ 무료임대기간 기재

❽ 임대인에게 대가로 제공하는 항목 체크(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 노동, 기타)

❾ 임대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필요
※ 임대인과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무료임대임을 확인

「사용대차 확인서」상 임대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징구 여부

「사용대차 확인서」상 임대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징구 여부
해당 주택의 소유주	미징구
해당 주택의 임차인(전전세)	(원칙*) 징구

* 「사용대차 확인서」 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징구 여부는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업무협의 후 결과에 따라 처리

9-14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서식23호-공통서식[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8.6.20〉

❶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❷ 위임장

위임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❸)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위임자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항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❹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❺(서명 또는 날인)

주소 :

❻ 법정대리인 등 동의

(성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❶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고,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확인해야 함

❷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

❸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기재

❹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❺ 위임자(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

❻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발 행 일 2019년 7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먼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